

# 2005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2005년도 공사실적액이 332억원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5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2005년도 공사실적액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58호)되었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율(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고시된 2005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5억3천9백만원 이상(제조업 50인)으로, 공사실적액이 332억원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5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 □ 도입 배경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개최로 장애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어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 □ 장애인 범위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범위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신체장애등급1~9급만 인정)는 2005년부터 제외된다. 단, 2004년 장애인고용계획에 포함된 인원은 인정된다.

□ 장애인 현황

지난 2002년 6월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등록 장애인은 121만 7천8백만 명이며, 경제활동가능 장애인은 63만 7천명 중 취업자는 45만 6천명이고 실업자는 18만 1천명(28.4%)으로 나타났다.

□ 부담금 신고 및 납부

-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소속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부담금(년1회) 자진 신고 및 납부.
- 장려금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초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년2회)을 신청
- 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은 상계처리 가능.

□ 노동부장관 고시 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을 제외한 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고시 공사실적액
  - 2004년도 : 314억4천1백만원(제조업 300인)
  - 2005년도 : 55억 3천 9백만원 이상(제조업 50인)

□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이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각출금 성격이다.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업종제외율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에 있어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의무고용에서 제외하는 업종별 비율

- 선박수리업 15/100~건설업 55/100~어업 85/100(노동부고시 제91-87호)

※ 건설업종은 상시근로자수에 45/100 인원만 의무적용대상임.

□ 상시근로인원 산출

건설공사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인원으로 환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 2004년 : 당해년도공사실적액/당해년도고시공사실적액×300인

Ex 1) A사 2004년 공사실적액 314억

2004년 고시공사실적액 314.14억

A사의 상시근로자 수 : 314억/314.14억×300인=300명(단수절사)

○ 2005년 : 당해년도공사실적액/당해년도고시공사실적액×50인

Ex 2) B사 2005년 공사실적액 70억

2005년 고시공사실적액 55.39억

B사의 상용근로자 수 : 70억/55.39억×50인=63명(단수절사)

□ 월별 의무고용 장애인 산출

[상시근로인원 - (상시근로인원×업종별제외율)]×2/100(단수절사)

Ex) A사 2004년 공사실적액 314억, 상시근로인원 300명

2004년 고시공사실적액 314억, 업종제외율 55/100

A사의 월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300명-(300명×55%)]×2/100=2.7명=2명(단수절사)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매월2명이며 1년에 24명을 고용하여야 한다.

□ 공사실적액 대비 의무고용 인원

○ 의무고용 대상 확대 시행

- 2006년도 : 200인~299인 이상

- 2007년도 : 100~199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100인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해설**

공사실적액	의무고용 인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14.41억 (2005년도 332.34억이상)	2명/월	2명/월	2명/월	2명/월
221.56억(200인)	적용대상 아님		1명/월	1명/월
120.8억(109명)	적용대상 아님			1명/월
120.8억이하	적용대상 아님			

※ 노동부 고시 공사실적액은 2004년 314.41억, 2005년 55.39억 적용.

- 공사실적액이 120.8억(109명) 미만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월1명 미만(0.98명)으로 적용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단, 법령으로는 의무대상임).

Ex1) A사 2007년 공사실적액 120억

2005년 고시공사실적액 55.39억

상시근로인원=120억/55.39억×50인=108명(단수절사)

상시근로자수	적용제외율(55%)	의무고용 인원(2%)	의무고용인원	비고
108명	108명×55%=59	(108-59)×2%= 0.98명 → 0명	0	계속 제외

□ **고용장려금 인원 산출**

- 당해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05년은 55.39억)이상이고, 상시근로인원에 의무가입률(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다.
- 노동부장관 고시 공사실적액 2005년 55.39억 기준

2005년 공사실적액	상시근로인원(A)	A×의무고용율(2%)	장려금지급 기준	장애인고용	장려금지급 대상
70억	70억/55.39×50인= 63.19명→63명 (단수절사)	63명×2%= 1.26명→2명 (단수절상)	2명	3명	1명

### □ 고용부담금과 장려금 계산

- 고용부담기초액과 고용장려금(단위 : 명)

년 도	고용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2003	437,000원	474,000원(경증남성기준)
2004	482,000원	고용율 30%이하:300,000원 고용율 30%이상:400,000원
2005	500,000원	

- 고용부담금 =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고용부담금 : 단수절사(의무고용인원 2.56명→2명)
  - 월1명을 고용하였다면 1명에 대하여 부담금 납부 대상.
- 고용장려금 = 장려금지급기준(상시근로인원 × 의무가입율)초과인원 × 고용장려금의 연간 합계
  - 고용장려금 : 단수절상 초과인원(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2.56명→3명)
  - 월4명을 고용하였다면 1명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 □ 근로장애인 관리

공사실적액이 2004년도 314억, 2005년도 332억, 2006년도 222억, 2007년도 121억 이상이면 장애인의 무고용 적용 사업주가 되며,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년도 노동부장관 고시 공사실적액(2004년 314억, 2005년 55억) 기준 이상으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의무고용대상업체와 무관)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 A사 근로장애인 관리 선례

각 현장 총무는 신규(기)일용근로자 중 장애인수첩소지자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본사에 보고, 본사 관리부에서는 각 현장 근로장애인 현황을 집계하여 다음해 회기년도 9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 후 부담금 납부 및 장려금 수령

### □ 장애인 업무

- 주무부처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산하공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공단본사 031) 728-7001~3, 전국대표전화 1588-1519